

# 제규정관리규정

제정 2007. 3. 1

개정 2009. 6. 8

개정 2011. 3.21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·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“제규정”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학칙·규정·세칙 등을 말한다.

② “규정”이라 함은 업무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·기준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
③ “세칙”이라 함은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업무의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제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4조(준수)** 각 부서의 장은 제규정이 준수되도록 소속 교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
## 제2장 규정의 제정 및 개폐

**제5조(제정 및 개폐권자)** 정관 이외의 제규정은 총장이 제정·개폐한다.

**제6조(규정입안)** ① 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 상 필요한 방침·기준·절차 등은 가능한 한 규정화하여야 한다.

② 제규정의 입안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로 송부하고, 주관부서는 내용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 회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처에서 입안할 수도 있다. (개정 2011.3.21)

③ 제규정의 내용이 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업무 소관부서에 그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7조(규정심의위원회)** ①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를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는 규정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(개정 2011.3.21)
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1.3.21)
- ⑤ 규정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어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. (개정 2011.3.21)

**제8조(제정 형식)** ① 제규정의 입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목적
  2. 용어의 정의
  3. 적용범위
  4. 각 조문의 명칭
  5. 시행일자
- ② 규정의 항목 구분은 편·장·절·조·항·호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다.
  - ③ 각 조문은 한글로 가로 쓰기로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한 영문 및 한문은 ( )안에 표시한다.
  - ④ 각 조문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되 각 조항은 ① · ② 로 각 호는 1·2로 각 호 이하는 가·나로 구분한다.

**제9조(효력)** ① 제규정의 효력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은 다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행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 (개정 2009.6.8)

-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- ③ 제규정 중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규정은 타 규정보다 그 효력이 우선한다.
- ④ 현행 규정이 신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 규정에 따른다.

### 제3장 관리·운영

**제10조(주관부서)** 제 규정의 제정·개폐·운영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11조(규정 관리)** ① 규정 및 세칙의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·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제 규정집을 편집·발간하여 각 소관부서에 배포한다.

- ② 배포된 제 규정집은 사용부서에서 보관·관리하며 제정 및 개폐되는 규정은 가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규정의 해석)** ① 제 규정은 주관적 또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.

- ②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해석을 따른다. 다만, 부서 간 책임한계의 구분, 기타 중대한 사항에 관한 것은 총장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 규 정 입 안 서

1. 규정명칭 :

2. 제정(개정·폐기) 사유 :

3. 주요골자 :

4. 참고사항 :

- 첨 부 : 1. 신규 대조문 1부.  
2. 규정 개정 및 제정(안) 1부.  
3. 관련부서 협의(의견)서(필요시 첨부) 1부.